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0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임종득 · 윤재옥 · 강선영
한기호 · 이준석 · 강명구
서지영 · 김예지 · 성일중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제재 시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9조의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를 “연가단축, 보수감액 또는 5일을 연장복무하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연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경고처분 1회에 5일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보수감액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경고처분 1회에 1개월을 적용하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연장복무란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3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단서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를 “제33조의10제2항제8호”로 한다.

3. 제3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5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최초로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 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 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 ----- ----- ----- ----- -----.
1.(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2. ----- -----제33조제3항----- -----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신 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u>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 축, 보수감액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연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 해진 연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경고처분</u>

① (생략)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신설>

④ (생략)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

1회에 5일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보수감액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경고처분 1회에 1개월을 적용하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연장복무란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 연가단
축, 보수감액 또는 5일을 연장
복무하게 -----.

-----.

1. ~ 7.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

교육 등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생 략)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지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

교육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3항 -----

3.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

-----.

1. 제33조제3항-----

2. 제33조제2항-----

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
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
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
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
에는 3회로 한다.

<신 설>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
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
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
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
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
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생략)

----- 제33조제3
항-----
-----.

3. 제3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
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
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
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5회 이상 경고처
분을 받은 경우

4. 제33조의10제2항제8호 -----

5. (현행 제4호와 같음)